

의안번호	제815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5년 1월 10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15

제출연월일 : 2025년 1월 1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시·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의무화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재난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방송협의회를 신설(안 제8조)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5. 관계법령 발체 : 불임

6. 비용추계서 : 불임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에 충청북도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 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시·군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은 대변인, 재난안전실장, 환경산림국장, 균형건설국장이 된다.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충북지역 방송사업자 중 재난방송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충북지역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중 재난방송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충북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재난방송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마.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⑥ 재난방송협의회 의 간사는 재난방송협의회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 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제11조제4항 관련)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비용추계서 작성대상)

○ 사 유

-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재난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방송협의회를 신설하는 부분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사유에 해당함.

○ 작성자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장 신 용 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에 충청북도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u>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 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u> <u>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시·군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u> <u>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u>

4. 그 밖에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은 대변인, 재난안전실장, 환경산림국장, 균형건설국장이 된다.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다.

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충북지역 방송사업자 중 재난방송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충북지역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
자 중 재난방송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
는 사람

다. 「방송법」 제2조제3호나
목에 따른 충북지역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중 재난방
송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
는 직위에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
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
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
람

마.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경력이 5년 이상인 사
람

⑥ 재난방송협회의 간사는 재
난방송협회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 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관련법령 발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도위원회에 시·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구위원회에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방송법

제2조(정의)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이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중앙재난방송협의회 구성과 운영)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 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명 대상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삭제

⑥ 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중앙재난방송협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중앙재난방송협회의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중앙재난방송협회의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⑨ 중앙재난방송협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⑪ 중앙재난방송협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재난방송협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재난방송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재난방송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방송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